

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26도6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박덕만 (6\*\*\*\*\*-\*\*\*\*\*), 회사 경영인  
주거 구리시 ○○○○ ○○, ○○  
등록기준지 서울 ○○○ ○○○○○○○○○ ○○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 김○영, 송○윤, 정○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2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

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20.

재판장 대법관 오 ○ 미

대법관 권 ○ 준

주 심 대법관 엄 ○ 필

대법관 박 ○ 재